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4.2.14>

해외건설업신고서 [ ]신규 [ ]변경

처리기간	3일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상호 또는 명칭		전화번호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

신고업종			
이미 신고한 신고업종 및 신고번호(이미 신고한 업종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)			
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(국내 관련 면허·등록)		국내 관련 면허·등록 일자 및 번호	. . . 제 호

변 경 내 역

변경구분	변경연월일	변경 전 사항	변경 후 사항

「해외건설 촉진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(제7조)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신고인 제출서류	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수수료 없음
	신규	「해외건설 촉진법」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)	1. 사업자등록증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(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	
	변경	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	사업자등록증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확인증	→	발급
신고인				해 외 건 설 협 회				신고인		

210㎜×297㎜ (신문용지 54g/㎡)